#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93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김선교·김성원·박덕흠

박충권 • 이헌승 • 정동만

김상훈 · 김석기 · 이만희

서지영 · 최보윤 · 서천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학대 관련 동물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판명을 위해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현행법상으로는 수사기관은 빠져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동물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수의법의검사 의뢰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법의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요령, 세부지침의 부재로 인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에 대한 의뢰를 수 사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수의법의검 사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를 "제1항제1호에 따라"로, "구청장은"을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를 "검사기관에"로, "있다"를 "있으며, 검사 요령,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9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 제39조(신고 등)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 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 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있으며, 제1호 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 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 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④ 제1항제1호에 따라-----신고한 자 또는 신고 ·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구청장 또는 장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 수사기관장은 농림축산검역본 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검사기관에-----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 뢰할 수 있다. ----- 있으며, 검사 요 령,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